

## 자금관리 계약 (복수참가회사용)

### 본 자금관리 계약은

- (1) [국가명]의 법률에 따라 설립, [등기소명과 등록 장소]에 [등록번호]로 등록하였으며, [등록한 사무실 주소]에 등록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명 및 법적 형태](이하 “모계좌 보유자”)와
- (2)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고,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남산 24 층, 25 층에 소재한 영업소를 통해 영업하는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이하 “모계좌 은행”) 간에 체결되었다.

### 이에:

- A. 모계좌 보유자와 다른 참가회사(아래에 정의함)는 그 각각의 기업적 이익을 위해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그 유동성 관리를 최적화하고자 하고,
- B. 이를 위해, 참가회사(아래에 정의함)는 모계좌 은행과 2 차은행(아래에 정의함)을 지정하여 본 계약(아래에 정의함) 조항에 의거한 서비스(아래에 정의함)를 제공하고자 하여,

###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1. 정의 및 해석.

##### 1.1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었으나 본 계약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 및 표현은 아래와 같은 의미이다:

**BNP Paribas:** 프랑스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16, boulevard des Italiens – 75009 Paris (France)에 등록된 사무소를 두고 있고, Paris Trade Register 에 등록번호 662 042 449 로 등록된 은행인 BNP Paribas S.A.,

**BNP Paribas Group:** BNP Paribas(그 지사 포함) 및 지분소유나 계약 또는 실질적 지배를 통해 그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배를 받거나 그를 지배하거나 그와 공동의 지배하에 있는 법인으로 구성된 그룹(해당 법인의 지사 포함),

**BNP Paribas Group Bank:** 모계좌은행 및 2 차은행,

**2 차계좌:** 모계좌 은행, 2 차은행 또는 제 3 자 은행의 장부에 참가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서, 모계좌 및 중간계좌(해당 시) 아래에 계좌집합 최하위에 있는 계좌. 상세는 부록 1 참조,

**2 차은행:** 장부에 하나 이상의 2 차계좌 및/또는 중간계좌를 보유하고 제 8.2 조에 따라 계약에 가입한 BNP Paribas Group Bank 의 지점일 수 있는, 모계좌 은행 외의 BNP Paribas Group 구성원

<sup>1</sup> 미국 사업체는 “등록 사무소”를 “주 사업장”으로 대체. “등록번호” 기재 불필요

**2 차기업:** 제 8.1 조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모계좌 보유자 외의, 기업 집단에 속하는 다른 기업,

**계좌:** 모계좌, 2 차계좌 또는 중간계좌,

**계좌집합:** 최상위에 모계좌를 갖는 한 계좌의 묶음. 상세는 부록 1 참조

**계약:** 부록을 포함한 자금관리 계약,

**계약해지사유:** 제 16.3 조에 기재된 사유,

**기업 집단:** 참가회사 각각에 대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직간접적으로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반드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아닌, 단일 법인의 지배를 받는 여러 법인으로 이루어진 집단,

**모계좌:** 모계좌 은행 장부에 모계좌 보유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집합 최상위의 계좌. 상세는 부록 1 참조

**서비스:** 선택 서비스와 함께, 계좌 간 자금관리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본 계약에 명시된 자동 자금관리 서비스로, 본 계약에 따라 각각 이용 가능하며 상세는 제 4 조 참조,

**선택 서비스:** 추가계좌 보고 서비스, 자금관리 후 내역보고 서비스, 회사간 현금 서비스 및 기타 본 계약에 의거해 수시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선택적 서비스,

**역-자금관리(逆資金管理):** 계좌에 기록된 매 자금관리 거래일 다음 영업일에 직전 영업일에 실행한 자금관리의 반대방식으로 거래를 자동집행하는 것으로 구성된 자금관리의 한 형태.

**영업일:** 해당 은행이 정상영업을 하는 날,

**은행:** 모계좌 은행, 2 차은행 또는 제 3 자 은행(또한, “은행들”은 이 중 2 개 이상을 의미한다),

**익일 목표잔액결산:** 계좌집합 내의 다음 상위의 계좌 차변에 기입함으로써, 익영업일에 사전에 정한 금액을 어느 한 계좌의 대변에 부기하는 자금관리의 한 형태,

**자금관리:** 계좌집합을 구성하는 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계좌의 차변 또는 대변에 금액을 기장하여 2 차계좌 및 중간계좌(존재하는 경우)의 잔액이 0(또는 수시로 합의되는 기타 목표액)에 이르도록 자동 관리하는 것(상세는 제 4.1 조 참조)

**자금관리 후 내역보고 서비스:** 제 4.2.1 조에 명시된 선택 서비스

**제 3 자 은행:** 하나 이상의 2 차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 5.2 조의 요건이 충족된 BNP Paribas Group 에 속하지 않는 은행

**중간계좌:** 모계좌 은행이나 2 차은행 장부에 참가회사 명의로 개설된, 모계좌와 하나 이상의 다른 중간계좌 및/또는 하나 이상의 2 차계좌 사이의 계좌집합 내 중간 계층에 있는 계좌. 상세는 부록 1 참조

**참가회사:** 모계좌 보유자 혹은 2 차기업

**추가계좌 보고 서비스:** 제 4.2.2 조에 명시된 선택 서비스

**참가약정서:** 실질적으로 본 계약 부록 2 양식과 같은 문서

**포함약정서:** 실질적으로 본 계약 부록 3 양식과 같은 문서

**회사간 현금 서비스:** 제 4.2.3 조에 명시된 선택 서비스

**회사간 현금 서비스 청약서:** 실질적으로 본 계약 부록 5 양식과 같은 문서

## 1.2 해석

본 계약에서:

- (a) “모계좌 보유자”, “참가회사”, “2 차기업”, “모계좌 은행”, “2 차은행”을 칭할 때에는 그 각각의 승계자 및/혹은 허가된 양수인과 전임자가 모두 포함된다.
- (b) 참가회사와 관련하여 “관련” 은행이란 해당 참가회사의 계좌를 보유하는 은행을 말한다.
- (c) 문맥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 (i) 단수는 복수를 포함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 (ii) 본 계약이나 부록, 그 외 다른 문서에 대한 지칭은 본 계약이나 부록이나 다른 문서에 대해 수시로 변용, 개정, 증보, 교체된 자료를 모두 지칭한다.
  - (iii) 법령에 대한 지칭은 현재 집행력이 있는 동 조항의 변경 또는 재제정 조항, 그 조항에 의거하여 수시로 제정되는 하위 법규, 관련 법률의 준용가능한 조항이나 그 법률의 하위 법규의 지칭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iv) 각 조항의 제목은 편의상 붙인 것으로 본 계약 해석 시 무시되고, 본 계약에서 조항과 부록을 가리킬 때에는 본 계약의 조항과 부록을 의미한다.

## 2. 목적 및 적용범위

본 계약은 서비스의 구축, 운영, 해지사유에 관한 조건 및 절차를 정한다.

## 3. 지정 및 권한

**3.1.**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모계좌 보유자와 각각의 2 차기업은 BNP Paribas Group Bank 를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한다.

**3.2.**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각각의 참가회사는 본 계약에 참가하는 기간 동안 관련 은행에 자금관리 거래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른 거래를 할 권한을 부여하고, 각 BNP Paribas Group Bank 는 보유 계좌에 대해 그러한 위임을 수용한다.

## 4. 서비스 설명

### 4.1. BNP Paribas Group 자동 자금관리 서비스

본 계약 조항에 의거하여 BNP Paribas Group 자동 자금관리 서비스는 대상 계좌집합 내에서 (i) 2 차계좌와 관련 중간계좌(존재하는 경우), 또는 2 차계좌와 모계좌 사이에 직접적으로, (ii) 존재하는 경우, 중간계좌와 다른 중간계좌, 또는 중간계좌와 모계좌 사이에 직접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a) 관련 2 차계좌 및/또는 중간계좌에 있는 대변잔고 전체나 일부분을 모계좌로 이체하거나, 혹은 2 차 계좌 또는 중간계좌와 중간계좌 간 자금관리의 경우 계좌집합에서 다음 상위의 중간계좌로 이체하거나,
- (b) 관련 2 차계좌 및/또는 중간계좌에 있는 차변잔고 전체나 일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모계좌에서 이체하거나, 2 차 계좌 또는 중간계좌와 중간계좌 간 자금관리의 경우 계좌집합에서 다음 상위의 중간계좌에서 이체하여,

각 2 차계좌 및 중간계좌(존재하는 경우)의 잔액을 '0' 또는 본 계약에 수시로 명시될 수 있는 기타 지정한 목표잔액으로 맞춘다.

제 3 자 은행에 보유된 계좌는 계좌집합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제 5.2 조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 14 조에 영향을 미치지 없이, 제 3 자 은행에 보유된 계좌와 관련된 자금관리 거래는 해당 제 3 자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계좌 잔고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아래의 자금관리 명세를 각 계좌 별로 본 계약 부록 1 에 정한다:

- (i) 거래통화
- (ii) 자금관리 거래 빈도
- (iii) 자금관리 조건
- (iv) 적용되는 특수 유형 자금관리 방식(익일 목표잔액결산이나 역-자금관리 등).

### 4.2. 선택 서비스

#### 4.2.1. 자금관리 후 내역보고 서비스

참가회사는 BNP Paribas Group 의 관련 구성원이 요구한 문서를 완성한 후, 언제든지 모계좌 은행 또는 2 차 은행에 보유한 계좌에 대해 해당 계좌에서 실행된 자금관리 거래 내역이 포함된 전자 명세서를 (별도로 합의한 사항이 없는 한 SWIFT MT940 포맷으로) 수령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4.2.2. 추가계좌 보고 서비스

참가회사는 부록 1 을 작성하여, 언제든지 모계좌 은행에 관련 계좌에 대한 잔액 경고신호(alert) 수령을 요청할 수 있다.

### 4.2.3. 회사간 현금 서비스

참가회사는 기업 집단에 속한 당해 참가회사의 원활한 그룹 내부 대출/차입 포지션 관리를 위해 회사간 현금 서비스 청약서를 작성하여, 언제든지 (i) 모계좌 은행에 자금관리 거래 후 그룹 내부 대출/차입 포지션에 대한 보고서 및/또는 그룹 내부 이자명세서를 요청할 수 있고, (ii) 관련 BNP Paribas Group Bank 에 회사간 현금 서비스 청약서에 명시된 지침에 의거하여 위 (i)에 따라 산정된 그룹 내부 이자 금액을 정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총칭하여, “회사간 현금 서비스”라 함).

모계좌 보유자는 이자명세서 작성 및 이자 금액 산정에 사용될 관련 입출금 이율에 대한 상세 내역을 모계좌 은행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율이 지표 금리에 의존하는 경우, 가산 마진을 포함한 최종 금리를 제공한다.)

모계좌 보유자는 이러한 금리 및/또는 마진을 결정하고, 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이러한 금리 및/또는 마진을 모든 참가회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항시 승인되도록 하는 데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합의되었다. 모든 참가회사는 다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한다:

(i) 어떤 BNP Paribas Group Bank 도 다음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a) 회사간 현금 서비스 청약서에서 선택한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이러한 금리 및/또는 마진의 선택이나 이에 대해 모니터링, 확인 또는 조언할 의무(이러한 금리 및/또는 마진이 합리적인지, 공정하게(arm's length) 이루어졌는지 또는 일반적인 시장 조건 또는 관련 규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부담하지 않으며;

(b) 회사간 현금 서비스 청약서에 명시된 세금 내역 또는 이자 금액이 원천징수세 또는 기타 종류의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따라서 회사간 현금 서비스에 따라 산정된 이자 금액에 대한 세금을 적용하고 납부하는 것은 전적으로 참가회사의 책임이고, 계속하여 참가회사의 책임으로 한다.

(ii) 회사간 현금 서비스와 관련하여 모계좌 은행에 제공되는 정보(원천징수세 또는 그룹 내부 이자 지급에 대해 잠재적으로 또는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기타 종류의 과세의 세율이나 금액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는 BNP Paribas Group Bank 가 그룹 내부 이자명세서를 제공하고 회사간 현금 서비스 청약서에서 지시된 자동 결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만을 위한 것으로서, 참가회사의 책임 하에 제공되며;

(iii) 회사간 현금 서비스와 관련하여 참가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참가회사들은 BNP Paribas Group Bank 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합의된 분쟁 해결이 있는 경우 이를 모계좌 은행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명확히 하자면,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이자 금액”은 당사자 간 합의될 경우 (해당 금액이 관련 관할권에서 이자 또는 조세 목적상 수수료의 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현할 수 있다.

## 5. 선행조건

### 5.1. 서비스 개시를 위한 조건

참가회사와 관련한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참가회사는 BNP Paribas Group Bank 측에 해당하는 “KYC(고객알기제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정보, 서류 및 확인서, 그리고 설립관련서류, 이사회 결의서, 조직도, 적절한 법률의견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당해 참가회사가 본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가입하고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역량과 권한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정보, 서류 및 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5.2 제 3 자 은행에 보유한 계좌 포함을 위한 조건

다음은 조건으로 참가회사가 제 3 자 은행에 보유한 계좌는 2 차 계좌로 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다:

- (a) BNP Paribas 와 해당 제 3 자 은행 간에 SWIFT 를 통한 메시지 처리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 (b) 실질적으로 부록 6 과 같은 양식의 제 3 자 은행 지시 서신이 해당 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참가회사에 의해 관련 제 3 자 은행에 발송되었고 해당 서신이 취소 또는 해지되지 않았으며;
- (c) 해당 제 3 자 은행이 해당 지시 서신에 포함된 지침을 따르기로 확인했거나 참가회사가 해당 제 3 자 은행이 해당 지시 서신에 포함된 지침을 따르기로 동의했음을 확인하고, 그러한 동의가 취소되거나 해지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참가회사는, BNP Paribas Group Bank 에게 서비스에 포함될 것으로 제안된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제 3 자 은행 보유 계좌를 수락할 의무가 없음을 인정한다.

## 6. 모계좌 보유자의 대리권

6.1 각 2 차기업은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모계좌 보유자에게 대리인으로서 2 차기업의 이름 및 계좌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하며, 모계좌 보유자는 동 행위를 수행한 즉시 2 차기업에 알려야 한다. 다만, BNP Paribas Group Bank 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

- (a)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BNP Paribas Group Bank 에게 제 3.2 조에 의거한 지정 및 권한을 부여, 수정 및/또는 철회할 권한;
- (b) 계좌의 포함 또는 제외 및/또는 계좌집합 내 순위 변경에 동의;
- (c) 2 차기업 및 2 차은행 가입 수락 및 동의;
- (d) 2 차기업이 직접 문서를 작성한 것처럼 2 차기업에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서 별도의 동의나 언급 없이 참가약정서 및 포함약정서의 동의 또는 작성;
- (e) 선택 서비스 제공의 요청, 수정 및/또는 종료;
- (f) 본 계약상 요구되는 2 차기업 관련 정보를 은행에 제공;

(g) 2차기업이 직접 관련 통지, 요구, 그 외 의사소통 정보를 적절히 주고받은 것처럼 2차기업에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서 본 계약에 따라,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은행과 통지, 요청, 요구 기타 의사소통 정보를 주고받기(모계좌 보유자 및 다른 참가회사가 은행으로 보낸 통지나 기타 의사소통 정보들 간에 상충이 있을 경우 모계좌 보유자의 통지나 의사소통이 우선한다)

**6.2** 각 2차기업은 모계좌 보유자가 언제든지 본 계약에 따른 이러한 역할 수행을 중단하고 승계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그러한 승계인이 (i) 기업 집단의 구성원이고 (ii) 새로운 모계좌 보유자가 되는 경우, (상기 명시된 방식으로) 대리인으로서 각 2차기업을 대리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모계좌 보유자는 즉시 각 2차기업에 임명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BNP Paribas Group Bank 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

## 7. 모계좌 은행의 대리권

**7.1** 2차은행은 모계좌 은행에게 당해 2차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대해 당해 2차은행의 명의로 계좌로 자금관리 등의 지시(및 그에 대한 변경)를 대리인으로서 수락할 권한을 위임하고, 모계좌 은행은 그러한 지시(및 그에 대한 변경)를 수락한 후 가능한 한 신속히 2차은행에 알려야 한다.

**7.2** 2차은행은 모계좌 은행이 2차은행을 대리하여 그 명의로 계좌로 다음에 동의할 권한을 위임한다:

- (i) 계좌 포함이나 제외 및/혹은 계좌집합 내 순위 변경
- (ii) 2차기업 및 다른 2차은행 가입
- (iii) 2차은행이 직접 그러한 문서를 작성한 것처럼 2차은행에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서 별도의 동의나 참조 없이 참가약정서 및 포함약정서 작성.

**7.3.** 각 2차은행은 모계좌 은행을 그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본 계약에 따른 통지와 연락을 받도록 위임하며, 모계좌 은행에 전달된 통지와 연락사항은 다른 2차은행들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본 조의 어떠한 사항도 통지나 연락사항을 관련 2차은행에 직접 또는 사본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7.4.** 각 2차은행은 모계좌 은행이 언제든지 본 계약에 따른 이러한 역할 수행을 중단하고 승계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그러한 승계인이 (i) BNP Paribas Group 의 구성원이고 (ii) 모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기 명시된 방식으로) 대리인으로서 각 2차은행을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 8. 가입

### 8.1. 2차기업의 가입

제 5.1 조에 따라, 2차기업이 본 계약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당사자들이 참가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 (i) 본인 및 계약에 이미 가입한 2차기업(존재하는 경우)을 대리하는 모계좌 보유자;
- (ii) 본인 및 계약에 이미 가입한 2차은행(존재하는 경우)을 대행하는 모계좌 은행;

- (iii) 해당 2 차기업;
- (iv) (해당되는 경우) 관련 2 차은행.

## 8.2. 2 차은행의 가입

2 차은행은 위 제 8.1 조 조항에 따라 2 차기업 가입 시 참가약정서를 작성하거나 제 9.1 조 조항에 따라 계좌 포함 시 포함약정서를 작성하여야 본 계약에 가입할 수 있다.

## 9. 계좌 추가와 제외

### 9.1. 신규 계좌 추가

다음 당사자가 포함약정서를 작성하는 조건에서 참가회사가 서비스에 새로운 계좌를 추가할 수 있다:

- (i) 본인 및 계약에 이미 가입한 2 차기업(존재하는 경우)을 대리하는 모계좌 보유자;
- (ii) 본인 및 계약에 이미 가입한 2 차은행(존재하는 경우)을 대리하는 모계좌 은행;
- (iii) 계좌를 보유한 2 차기업. 단, 모계좌 보유자가 계좌를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
- (iv) (해당되는 경우) 관련 2 차은행.

### 9.2. 계좌 제외

**9.2.1.** 폐쇄한 계좌는 서비스 제외가 가능한 시점부터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9.2.2.** 계좌가 동결되거나 차압·봉쇄·압류·몰수·담보 및 달리 질권 설정 또는 (법률의 작용에 의해)양도된 경우 또는 본 계약에 따라 예정된 자동 자금관리 약정의 이행이 법률 또는 하위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모계좌 은행이나 관련 2 차은행은 사전 통지없이 즉시 서비스에서 계좌를 제외할 수 있다.

**9.2.3.** 모계좌 보유자나 관련 참가회사가 모계좌 은행에 사전 서면 통보 후 해당 계좌를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 영업일 이후나 그 통지에 기재된 이후의 날짜를 기해 발효된다.

**9.2.4.** 제 3 자 은행에 보유한 계좌도 다음의 경우 서비스에서 제외될 수 있다.

- (i) 제 3 자 은행이 제 5.2(a)조에 언급된 계약 또는 제 5.2(b)조에 언급된 제 3 자 은행 지시 서신에 따른 의무를 정당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모계좌 은행은 이 경우 통지 후 서비스에서 제외할 수 있음;
- (ii) 관련 제 3 자 은행에 대한 제 3 자 은행 지시 서신에서 제공된 지시가 종료되었음을 모계좌 은행에 통지하는 경우; 또는

**9.2.5.** 당해 제외 계좌는 제외의 효력발생시점부터 서비스에서 제외되며 당해 계좌를 보유한 참가회사와 관련 은행 간에 별도로 체결한 계좌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의거하여 청산한다. 당해 계좌는 제외의 효력발생일에 최종 자금거래가 본 계약에 따라 실행된 직후에 제외된다.

**9.2.6.** 계좌집합에서 중간계좌를 삭제할 경우, 모계좌 보유자가 삭제한 중간계좌를 다른 계좌로 대체하라고 지시하지 않는 한, 계좌집합 내의 다음 계좌를 통해 관련 계좌의 자금관리 서비스를 계속해야 한다.

**9.2.7.** 모계좌가 제외되는 경우, 모계좌 보유자가 모계좌 은행에 보유한 다른 계좌로 제외된 모계좌를 대체하라고 지시하지 않는 한, 당해 모계좌가 속한 계좌집합 전체에 대한 서비스는 중단된다.

## 10. 모계좌 보유자의 의무

모계좌 보유자는 아래와 같이 하기로 동의하고 확약한다:

- (a) 모계좌 보유자는 본 계약 조건에 따른 자금관리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계좌에 항상 충분하고 즉시 이용가능한 잔고를 유지하거나 당좌 차월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하고(각 경우 별도 계약(해당 시)에 따라 모계좌 은행이 모계좌 보유자에게 부여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자금관리 거래 진행 상황 및 계좌잔액을 모니터링한다;
- (b) 모계좌 보유자는 모계좌 은행이 계좌, 참가회사 및/또는 기업 집단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즉시 그 정보를 제공한다.

## 11. 연대책임

여하한 사유로 계좌에 미지급 채무 잔액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모계좌 보유자와 다른 참가회사는 BNP Paribas Group Bank 에 동 채무 잔액 금액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은행이 요구하는 경우 그 채무 잔액 금액을 관련 이자 및 비용과 함께 은행에 지불한다.

동 책임은 계속적이며, 특히 현재 참가회사가 BNP Paribas Group Bank 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채무 금액이 없다는 이유 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감소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 (a) 차변잔액에 대한 강제력 상실이나, 지불 시기나 방식 또는 장소, 또는 기타 조건의 변경;
- (b) 해당 차변잔액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참가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참가회사 또는 기타 채무자의 면제 또는 부분 면제;
- (c) 참가회사의 무자격 또는 능력, 권한 및 법인격의 결여 또는 해산이나 지위 변경;
- (d) 해당 차변잔액에 대한 담보의 교환, 해제 또는 질권 취득 및 유지 실패
- (e) 파산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

참가회사나 다른 제 3자가 지급필요 금액을 BNP Paribas Group Bank 에 지급하고, 이후 BNP Paribas Group Bank 가 참가회사나 제 3자의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이나 도산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른 유사한 자에게 당해 금액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경우, 본 규정의 집행 목적상 미지불 차변잔고는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당해 거래가 최종 결제되지 않았거나 해당 일자 이후 취소, 환급 또는 달리 무효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당 해지/종료일 당시 미지불 차변잔고에 대한 책임 및 해당 해지/종료일 전에 기록된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은 본 계약의 해지 및 참가회사의 본 계약 참가 종료 이후에도 유효하다.

## 12. 참가회사의 진술 및 보장

참가회사는, 본 계약 체결일 또는 본 계약 가입일 및 본 계약 기간 중 서비스가 제공된 날에, 각 BNP Paribas Group Bank 에 아래와 같이 진술 및 보장하며, 각 BNP Paribas Group Bank 가 동 진술과 보장에 의거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가입하게 됨을 인정한다:

- (a) 설립 관할권의 법률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하며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법인으로서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의무(특히,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위 제 11 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는데 필요한 법인 및 기타 조치나 승인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되었으며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 (b) 참가회사는 각 사업을 영위하는 각 관할지역에서 자산을 소유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이 있다;
- (c) 본 계약에 따른 참가회사의 의무는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구속력이 있고 본 계약 조건에 따라 참가회사에 대해 집행 가능하다. 또한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이 참가회사에 적용되는 법률이나 규정(조세 법률 및 규정 포함) 또는 참가회사가 당사자이거나 참가회사나 그 자산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어떠한 담보나 계약 및 기타 다른 확약, 증서,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며, 참가회사는 계좌나 서비스를 테러, 자금세탁, 부패, 탈세, 경제적 제재 및 금수조치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이나 규정, 명령을 위반하거나 은행이 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 (d) 본 계약 체결과 이행은 그 기업의 목적 및 정관 또는 기타 유사한 설립문서에 따른 것이며, 본 계약에 따라 예정된 자동 자금관리 및 이와 관련된 기본 거래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기업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스스로 확인하였다;
- (e) 본 계약에 따른 자동 자금관리약정 및 그와 관련한 기본 거래는 다른 참가회사나 채권자에 비하여 참가회사에 특혜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대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진다;
- (f) 참가회사는 다른 참가회사와 함께 본 계약에 의한 약정을 유효하도록 하는 모든 조치(다른 참가회사들과 기업 집단의 자금관리 조건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취하였으며, 이 중 어떠한 것도 모계좌 보유자 또는 2 차기업이 그들 간에 또는 제 3 자에 대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는 능력을 제한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g) 참가회사는 본 계약에서 예정된 자동 자금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적용되는 관련 법규, 조세 관련 법률 및 영향,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 (h) 서비스와 관련해 제공한 모든 정보는 진실되고, 완전하며 정확하다;
- (i) 참가회사는 기업 집단에 속한다;
- (j) 참가회사에 적용되는 회계 및 다른 규칙에 의거하여, 참가회사의 활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장부와 기록을 유지한다;
- (k) 계좌는 BNP Paribas Group Bank 이외에는 질권, 양도담보, 유치권, 선취권, 기타 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그러하다.

각 참가회사는 모계좌 은행에 다음 정보를 즉시 알린다:

- (i) 상기 진술이 사실이 아니거나 정확하지 않게 된 경우;
- (ii)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
- (iii) 제 3자 은행에 발송된 지시 서신에 포함된 지침이 취소 또는 종료된 경우; 또는
- (iv) 계약해지사유 발생시

### 13. 가격 책정 및 인보이스

서비스 수수료 및 지불 약정에 대해서는 부록 4 또는 은행들과 합의된 기타 문서에서 정해진 바를 따르도록 한다. 계약 수정에 대한 구축 수수료 및 관리 수수료는 모계좌 보유자가 모계좌 은행에 지불하며 모계좌 또는 모계좌 보유자와 모계좌 은행 간에 합의한 기타 지정된 지불 계좌에서 인출된다. 매월 부과하는 수수료는 관련 계좌가 서비스에 등록되거나 서비스에서 제외된 날과 관계없이 그 달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러한 수수료는 모계좌 보유자가 모계좌 은행에 지불하거나(중앙 집중식 지불), 관련 2차기업이 2차 은행에 지불한다(분산식 지불). 수수료는 모계좌(중앙 집중식 지불) 또는 관련 2차 계좌(분산식 지불) 또는 관련 참가회사와 모계좌 은행 간에 합의한 기타 지정된 지불 계좌에서 수수료 만기가 된 달의 다음 달 중에 인출된다. 수수료는 30 일 전 사전 통지를 통해 BNP Paribas Group Bank 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본 계약에 따라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참가회사가 BNP Paribas Group Bank 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와 기타 지급금은 일체의 제한이나 조건, 상계나 반대청구가 없어야 하고 그 성격이나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불문하고 세금 등(“세금”)의 공제나 원천징수 없이 지불해야 한다. 참가회사가 BNP Paribas Group Bank 에 지급해야 할 지급액에서 세금을 공제 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 참가회사는 BNP Paribas Group Bank 가 최종 수령할 금액에는 변동이 없도록 관련 원천징수액을 감안해서 필요한 만큼 지급액을 증액해야 한다.

### 14. 책임과 면책; 인정

#### 14.1 책임

**14.1.1** BNP Paribas Group Bank 는 본 계약 조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을 다한다.

**14.1.2** 각 참가회사는 이에 다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 (a) 서비스는 참가회사들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거래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순전히 기계적인 장치이다;
- (b) BNP Paribas Group Bank 는 참가회사에 대한 추가 확인이나 참조 없이 제 3 자 은행으로부터 받은 정보(해당 제 3 자 은행이 보유한 계좌 잔액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의존할 수 있다;
- (c)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자금 조달 제공의 제안을 구성하거나 BNP Paribas Group Bank 가 참가회사에 자금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d) BNP Paribas Group Bank 는 본 계약에서 예정된 약정에 정당하고 적절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참가회사들이 수행했거나 수행해야 하는 사항(회사간 대출 체결 및 법률 및 세무 자문을 받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나 책임도 갖지 않으며, 이 중 어떠한 사항도 모계좌 보유자 또는 2 차기업이 그들 간에 또는 제 3 자에 대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적절히 이행할 책임을 제한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에 BNP Paribas Group Bank 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그러한 모든 사항이 적절히 처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인정한다;
- (e) BNP Paribas Group Bank 는 참가회사들 간에 또는 참가회사들과 제 3 자(참가회사가 아닌 기업 집단의 구성원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간에 수행되거나 체결될 수 있는 금융 거래 및/또는 기본 거래 또는 계약(그룹 내부 회사 대출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감독, 검증, 모니터링, 해석 또는 집행할 어떠한 의무도 없다;
- (f) BNP Paribas Group Bank 는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세무, 회계, 법률 또는 기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 제공은 세무, 회계, 법률 또는 기타 자문을 구성하지 않고 이를 구성하거나 대체하려는 의도도 없다;
- (g) 선택 서비스에 따라 또는 달리 발행된 보고서, 명세서 및/또는 이메일에 의한 경고신호(alerts)는 (i) 상업적으로 합리적이고, 비의존적인 조건으로(non-reliance basis), 정보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BNP Paribas Group Bank 는 선택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배제하고, (ii) 증거 또는 법률상 어떠한 가치도 없으며, 해당 BNP Paribas Group Bank 가 제공한 공식 계좌 명세서만이 해당 시점에 해당 BNP Paribas Group Bank 의 계좌 상태에 대한 확정적인 내역으로 간주된다;
- (h) 참가회사의 지시에 의거하여 작위(또는 부작위)를 한 경우, BNP Paribas Group Bank 는 그러한 작위(또는 부작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 (i)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모계좌 보유자의 지시를 받지 못한 경우, 각 BNP Paribas Group Bank 는 참가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j) BNP Paribas Group Bank 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재량 또는 권한이나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해당 BNP Paribas Group Bank 의 절대적이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행사하거나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 BNP Paribas Group Bank 는 이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없다.

**14.1.3** BNP Paribas Group Bank 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 BNP Paribas Group Bank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전술한 내용을 제한하지 않고, BNP Paribas Group Bank 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실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BNP Paribas Group Bank 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BNP Paribas Group Bank 는 다른 BNP Paribas Group Bank, 제 3자 은행 또는 기타 제 3자 등 타인이 행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4.1.4** 또한, BNP Paribas Group Bank 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다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a)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유보, 지연, 종료, 기능이상이나 동 서비스 접근 불가. 불가항력이란 천재지변, 전쟁, 소요, 테러공격 및 기타 국가비상사태 등의 사항을 의미한다;
- (b) 본 계약 또는 제 5.2 조에 언급된 계약 또는 지시 서신과 관련하여 제 3자 은행의 미이행이나 이행 지연 또는 제 3자 은행으로부터 받은 정보의 정확성 결여.

**14.1.5**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BNP Paribas Group Bank 는 관련 법률에 의해 그러한 책임이 면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범위에서는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 14.2 면책

은행측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참가회사들은, 은행에게 발생한 손실이나 비용 (법률비용 포함)이나 그에 대한 소송이나 청구, 법적 절차나 이의 및 서비스 부정사용이나 본 계약 조항 위반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과 비용과 지출에 대해 은행 각각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 조에 따른 책임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은행에게 제공한 면책이나 기타 다른 약정에 따라 참가회사가 당해 은행에게 제공한 면책에 영향을 없다.

## 14.3 존속

본 제 14 조는 BNP Paribas Group Bank 의 이익을 위해 본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 15. 금융거래 비밀유지와 데이터 보호

### 15.1 금융거래 비밀유지 & 데이터 처리 정보 / 통신

본 계약에 의거하여서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정보제공인”)가 다른 당사자(“정보수령인”)에게 공개하는 참가회사 및/또는 BNP Paribas Group Bank 와 관련있는 정보는 정보수령인이 모두 기밀로 처리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a) 당해 정보가 정보수령인이 정보제공인에 대해 갖는 기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도 직간접적으로 공개되었거나 공개되는 정보

- (b) 당해 정보가 정보수령인에게 전달되는 그 시점에 서면으로 동일 정보가 기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c) 정보제공인이 정보를 제공한 날보다 먼저 그러한 정보를 정보수령인이 알게 된 경우나, 그 날짜 이후에 다른 정보출처에서 합법적으로 입수한 경우로, 각 경우 정보수령인이 알고 있는 한, 그러한 정보가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기밀 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d) (본 계약 전후를 불문하고), 그러한 정보가 서면계약의 대상이고, 그 계약에서 정보제공인이 그러한 기밀정보 공개에 동의한 경우
- (e) 본 계약 하의 당사자의 권리를 위해서 그러한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본 계약에 포함되는 기타 상반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참가회사는 다음의 경우 BNP Paribas Group Bank 가 참가회사의 정보 및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 (i) BNP Paribas Group 에 대해, BNP Paribas Group 구성원들 간에, 제 3 자 은행 및 기타 참가회사에 대해, 각 경우 본 계약 이행, 법규준수, 모니터링 및 보고 요건을 위해서나, 그러한 다른 참가회사에게 BNP Paribas Group Bank 와 합의한 양식과 채널을 통해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 (ii) 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감사인, 전문 자문가, 공급자, 서비스 제공자 또는 BNP Paribas Group Bank 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자에게 기밀유지를 조건으로 제공
- (iii) 법률이나 규제 요건에서 요구하여, 또는 해당 당국의 요청에 따라서 권한 있는 관할사법권, 규제, 정부, 조세, 행정당국에 공개
- (iv) 관련 법령, 법원명령 또는 결정에 의거

## 15.2 데이터 보호

본 계약을 이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각 BNP Paribas Group Bank 는 본 계약에 참여하는 참가회사의 임직원 또는 대표자("관련자")와 관련이 있는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개인정보")를 데이터 컨트롤러로서 해당 정보보호 법률에 의거하여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다. 해당 법률에는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Regulation (EU) 2016/679 (GDPR))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관련자는 관련 법률에서 정의한 한계 범위 내에서, 그 조건에 의거하여, 제 18 조에 지정한 주소지에 있는 모계좌 은행으로 서면 요청서를 보냄으로써 그 개인정보와 관련한 특정 권리(접근, 수정, 삭제 권리 등)를 행사할 수 있다. 각 참가회사는 관련자에게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고 해당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요청서를 발송해야 할 주소를 관련자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

서비스 접근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는 각 BNP Paribas Group Bank, BNP Paribas Group 의 다른 구성원, 협력업체 및 제 3 자 은행을 대신하여 수집할 수 있다.

각 참가회사는 본 계약으로 (i) 제 15 조의 의무를 모두 수용하며 (ii) BNP Paribas Group Bank 또는 제 3자 은행이 요청하는 기밀유지, 금융비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서에 서명을 하고 관련자가 서명을 하도록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 16. 계약 기간과 계약 해지사유

### 16.1 기간

본 계약은 기간의 제한이 없이 체결되며 본 계약 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완전한 효력이 있다.

### 16.2 원인 없는 계약 해지

본 계약은 모계좌 은행이나 모계좌 보유자가 상대방에게 본 계약에 달리 명시적으로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계약 해지는 계약 전면 해지를 의미한다.

2차기업이나 2차은행은 해지 4주전까지 다음과 같이 서면을 통해 (i) 2차기업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모계좌 은행에, (ii) 2차은행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모계좌 보유자와 각 관련 2차기업에 통보.

### 16.3 원인 있는 계약 해지

2차기업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생한 경우, 모계좌 보유자나 모계좌 은행, 관련 2차은행은 2차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여(모계좌 보유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모계좌 은행으로 사본을 보내고, 모계좌 은행이나 관련 2차은행이 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모계좌 보유자에게 사본을 보냄) 언제라도 그 2차기업의 본 계약 가입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a)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확약이나, 보증,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경우;
- (b) 본 계약에 따라 지불액 지급일에 지불을 하지 않은 경우;
- (c) 본 계약에 의거한 다른 의무를 이행 및 준수하지 않고 그러한 불이행 상태가 (시정 가능할 경우) 발생일부터 15 일간 시정되지 않은 채로 지속되는 경우;
- (d) 더 이상 기업 집단 소속이 아닌 경우;
- (e)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이 불법인 경우
- (f) 2차기업의 재정상황이 본 계약이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악화된 경우;
- (g) 당해 2차기업이 지불불능 상태가 되었거나 그 부채 지불 만기가 되었으나 지불할 수 없거나 지불 능력이 되지 않음을 인정하거나 부채 상환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 및/또는 그러한 2차기업의 파산, 지불불능, 정리해산, 재산관리, 법정관리상태, 구조조정, 해산과 관련된 법인 행위나 법적 절차 또는 기타 절차나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어떠한 관할 사법권에서 유사한 절차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 (h) BNP Paribas Group 의 구성원의 판단으로 본 계약에 따라 2 차기업을 위해 서비스를 계속하는 것이 관련 (국내 또는 해외) 법률을 위반하거나 수용 불가능한 수준의 준법 또는 경제적 리스크를 초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 (i) 계좌에 만기가 되어 지불하지 않은 차변 포지션이 있는 경우;
- (j) 당해 2 차기업을 더 이상 서비스 등록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건 발생 시 모계좌 은행은 (해당 시) 모계좌 보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본 계약을 즉각 해지할 수 있다:

- (i) 모계좌 보유자에게 위 (a) ~ (j) 중 어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한 경우,
- (ii) 모계좌 보유자나 모계좌 보유자가 속한 기업 집단의 재정상황이 본 계약 이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악화된 경우;
- (iii) 모계좌나 다른 계좌에 미지급 채무 잔액이 있는 경우.

또한, 2 차기업을 본 계약에 의거한 의무 이행이 위법한 경우 언제든지, 모계좌 은행과 모계좌 보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본 계약 참여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16.4 계약 해지의 결과

2 차기업을 대한 계약해지는 2 차기업을 대한 의무나 보증은 존속한다는 조건 하에 2 차기업을의 본 계약 참여만 중단하는 것이다.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본 계약이나 그 참여를 해지하는 참가회사는 다른 참가회사에 그러한 해지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BNP Paribas Group Bank 가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본 계약이나 그 참여를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 사실을 다른 BNP Paribas Group Bank 에 즉시 알려야 한다.

해지로 인해 중간계좌가 계좌집합에서 제외된 경우, 모계좌 보유자가 제외되는 중간계좌를 다른 계좌로 대체하도록 지정하지 않는 한 계좌집합내의 다음 계좌를 통해 관련계좌의 자금관리 서비스를 계속한다.

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a) 계약 해지 전이나 관련 고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참가회사가 부담하는 (실제 또는 불확정적인) 책임과 관련하여 BNP Paribas Group Bank 가 갖고 있는 계속적인 권리 및 (b) 본 계약에 남아있는 다른 참가회사에 대해 BNP Paribas Group Bank 가 갖는 계속적인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각 참가회사는, 참가회사의 계약 참여 해지 또는 관련 계좌의 제외 이후라도 그 해지 또는 제외 전에 잘못 수행한 자금관리 거래는, 본 계약 전체가 해지된 경우라도 해당 BNP Paribas Group Bank 가 취소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 17. 일반사항

**17.1** BNP Paribas Group Bank 가 지급받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한 BNP Paribas Group Bank 관계자의 증명서는 (명백한 오류를 제외하고) 법적 절차 이전 및 법적 절차 중 해당 BNP Paribas Group 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존재 및 해당 BNP Paribas Group Bank 가 지급받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과 관련하여 각 참가회사에 대해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으며 결정적이다.

**17.2.** 각 참가회사는 BNP Paribas Group Bank 가 단독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가회사에 대한 추가 통지 없이 참가회사와의 전화 대화 및 전자 통신을 모니터링 및/또는 기록할 권리가 있음에 동의한다. 이러한 기록은 BNP Paribas Group Bank 단독의 독점적인 재산이며 계속하여 그러한 재산으로 유지되고,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 동안 보관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은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또는 절차에서 BNP Paribas Group Bank 에 의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BNP Paribas Group Bank 는 해당 기록의 복사본 또는 전자본을 법원 또는 규제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

## 18. 통지

본 계약 조건에 따라 발송한 통지는,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 익일특송, 팩스나 서신으로 아래의 주소로 전달해야 한다:

- (i) 모계좌 보유자: [주소란] [팩스] [이메일 주소];
- (ii) 모계좌 은행: [주소란] [팩스] [이메일 주소];
- (iii) 2 차기업: 관련 참가약정서에서 언급한 주소 및/혹은 팩스 및/혹은 이메일 주소;
- (iv) 2 차은행: 관련 참가약정서 또는 포함약정서에서 언급한 주소 및/혹은 팩스 및/혹은 이메일 주소.

제 16 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당사자의 통지의 의사표시는 등기우편이나 익일특송으로 해야 한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 계약의 세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19. 완전한 합의, 계약의 분리, 권리 불포기

### 19.1 완전한 합의, 계약 변경

본 계약은 참가회사와 BNP Paribas Group Bank 에 구속력이 있다. 또한 각 계좌는 일반 은행 약관 및 BNP Paribas Group Bank 의 기타 계약에 계속하여 구속된다. 단, 서비스 문제와 관련하여 본 계약 조건과 다른 계약 조건이 직접 상충되거나 불일치하는 경우, 그러한 상충이나 불일치의 범위 내에서 본 계약 조건이 우선한다.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본 계약을 개정할 때에는 (자신과 다른 모든 참가회사를 위해 행위하는) 모계좌 보유자와 (자신과 모든 2 차은행을 위해 행위하는) 모계좌 은행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적법하게 서명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다. 각 2 차기업은 이러한 절차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모계좌

보유자를 그 대리인으로 지명하고, 각 2 차은행은 이러한 절차에 동의하며 모계좌 은행을 그 대리인으로 지명한다.

### 19.2 위법, 부분적 무효

본 계약의 어떤 조항이, 언제라도, 여하한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거나, 또는 그러한 상태인 경우라도, 이는 본 계약의 다른 조항들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른 관할권의 법률 하에서 해당 조항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하한 참가회사가 언제 어떤 이유로든 본 계약(또는 그 일부)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더라도, 이는 다른 각 참가회사의 본 계약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9.3 권리 불포기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BNP Paribas Group Bank 의 권리 및 구제 수단은 이중적이고 상호 보완적이며,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권리 및 구제 수단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는, 은행은 하나의 권리나 구제 수단을 행사하더라도 다른 권리나 구제 수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권리와 구제 수단을 중첩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당사자들이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권리 또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를 지연하더라도 그에 대한 포기로 작용하지 않는다. 본 계약의 모든 조항 위반에 대해 BNP Paribas Group Bank 가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이후의 위반에 대한 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본 계약의 위반에 대한 BNP Paribas Group Bank 의 권리의 포기는 해당 BNP Paribas Group Bank 가 서면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무효이다.

## 20. 참조

제 15 조에도 불구하고, 각 참가회사는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BNP Paribas Group Bank 가 해당 참가회사를 참조 사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이를 목적으로 제 3 자에 해당 참가회사가 BNP Paribas Group Bank 의 고객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다만, 본 계약의 조건 및 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정보나 데이터는 해당 참가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기밀로 유지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 21. 하도급계약

BNP Paribas Group Bank 는 본 계약, 선택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기타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 하도급자를 이용할 수 있으며, 참가회사는 이에 이를 인정하고 수락한다.

## 22. 양도불가

참가회사는 모계좌 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에 따른 그 권리나 의무의 일부나 전체를 양도하거나, 하도급하거나, 이전, 담보설정 또는 달리 거래할 수 없으며, 모계좌 은행의 해당 사전 서면 동의 없는 위와 같은 양도는 무효이다.

**23. 준거법과 관할권**

본 계약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적 의무는 대한민국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본 계약의 존속, 효력 또는 종료에 관한 분쟁 포함)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4. 언어**

본 계약은 영문과 국문으로 작성된다. 영문본과 국문본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국문본이 우선한다.

**25. 부분**

본 계약(및 이와 관련한 각 변경, 수정 및 포기)은 수 개의 부분('원본 서명(wet ink)' 또는 전자 서명을 통해, 그리고 당사자 간에 물리적으로 또는 팩스, 이메일 또는 기타 형태의 전자 통신을 통해 공유되는 부분)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이는 함께 하나의 동일한 문서를 구성한다.

본 계약은 아래 서명란에 명시된 가장 최근의 일자로 체결되어 유효하다.

[모계좌 은행명]	[모계좌 보유자명]
이름: 직책:  서명	이름: 직책:  서명
이름: 직책:  서명	이름: 직책:  서명
날짜:	날짜: